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1.



김 기 열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기열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 안 제5조에는 시설이용 등의 제한,
- 안 제6조에는 물놀이장의 관리,
-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시설 이용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821004
------------	----------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 김기열, 박종길, 이영빈, 박정환
조복희, 김귀화, 서민우, 박재형

1. 제안이유

-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나.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안 제4조)
- 다. 시설이용 등의 제한(안 제5조)
- 라.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6조)
- 마.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조례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 ·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 ·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차. (생 략)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